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1140-100001-10



2025년 연구보고서

법·제도상 취약계층의 통계적 측정을 위한 기초 연구

2026. 1.



<https://mods.go.kr/dsri>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보고서 2025-07

법·제도상 취약계층의 통계적 측정을 위한 기초 연구

민경아 · 길유미



Statistics Korea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발간사

“데이터의 가치는 분석과 활용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혁신과 효율성 향상 등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급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데이터는 더 이상 단순한 숫자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나침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연구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AI 기반의 공공 AX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연구에 지속적으로 매진해 왔습니다.

2025년 연구보고서에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첨단 기술을 국가통계에 접목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 연구 성과를 담았습니다.

첫째, 인공지능(AI) 기반 국가통계 기술혁신을 선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을 현장조사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조사자료의 내용검토 및 자동분류, 질의응답에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였으며, 이는 통계 생산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생성형 AI를 활용한 나우캐스트 지표 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는 통계서비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점차 열악해지고 있는 조사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통계방법론 연구와 국가통계 품질제고를 위한 연구를 강화하였습니다.

확률표본과 자원자표본을 통합한 추정 방안 연구는 응답자 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비확률표본의 병행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데이터 과학기술을 활용한 자료수집 개선 연구와 데이터 통합방법 연구는 다양한 데이터의 연계·통합 방법을 보다 체계화하였습니다.

셋째, 사회적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에 집중하였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고립·은둔 청년’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문항 개발 연구를 비롯하여, 돌봄 분야 국가통계 활용 방안과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통계·지표 분석 연구는 데이터가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소득이동통계 심층 분석 연구와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중·고령기 비교 연구는 관련 정책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표 작성 연구와 퇴직연금 적립금 배분 방법 연구는 국민의 체감 경기를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합리적인 경제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새롭게 출발한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은 앞으로도 최신 기술과 사람을 잇는 데이터 연구를 통해 국가통계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본 연구보고서가 통계 생산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각계각층의 의사결정자에게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1월

국가데이터연구원장

가진

목 차

제1장 서론	1
제2장 법·제도에서의 취약계층	3
제1절 취약계층 관련 법령 현황	3
제2절 법령상 취약계층 정의	7
제3장 전통적 취약계층과 국가통계	12
제1절 전통적 취약계층	12
제2절 전통적 취약계층 유형과 국가통계 현황	13
제4장 신(新)취약계층과 국가통계	24
제1절 신(新)취약계층	24
제2절 신(新)취약계층 유형과 국가통계 현황	25
제5장 결론	32
참고문헌	34
Abstract	35

요 약

본 연구는 취약계층 관련 통계 수요에 대비하여 현행 법·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개념과 유형별 관련 통계 현황을 살펴보았다. 2025년 3월 현재 약 150여 개의 현행 법령에서 ‘취약계층’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취약계층’을 용어로 단순 언급하거나 대상을 나열하는 수준이며, 법적 정의를 제공하고 있는 법령은 제한적이다. 또 법령에 따라 범위나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 「재난안전기본법」과 「소비자기본법」에서 사용되는 ‘안전 취약계층’ 용어를 살펴보면, 「재난안전기본법」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소비자기본법」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결혼이민자를 그 범위에 포괄하고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보건의료기본법」과 「지역보건법」에서 사용하는 ‘보건의료 취약계층’ 용어는,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를, 「지역보건법」에서는 여성, 노인, 장애인을 그 대상으로 하여 포괄 범위가 다르다. 또 ‘취약계층’과 관련하여 아동과 청소년 관련 여러 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따라 연령 기준이 달랐으며, 각 법령에 근거 한 통계에서도 조사대상 수준과 범위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전통적 취약계층과, 고립·은둔, 영케어러와 같은 돌봄 취약계층, 기후변화 취약계층 등 최근 부상한 신(新)취약계층과 관련된 법령과 통계 작성 현황을 살펴보았다. 전통적 취약계층 관련 통계는 다양한 주제의 개별 통계 외에도 여타 기존 통계에서 분류변수(성, 연령, 가구형태 등)에 의해 세분화하여 활용 가능한 반면, 신취약계층의 경우 기존 통계에서 일반적 분류변수로는 해당 계층을 구분하기 어려우며, 관련 통계를 신규 개발 중인 사례가 많아 가용 데이터가 매우 제한적이다.

주요 용어 : 취약계층, 전통적 취약계층, 신취약계층, 정의

제 1 장

서 론

사회·경제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개념은 전통적인 범주를 넘어 확장되고 있다. 과거에는 아동,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과 같은 전통적 취약계층이 주요 정책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사회적 취약성이 중첩되고 다양한 위기에 동시에 노출된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자주 등장하는 고립·은둔 청년, 영케어러(young carer), 과다채무자, 디지털 취약계층 등이 이러한 신(新)취약계층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1998년)와 세계 금융위기(2008년) 등 여러 경제위기를 겪으며 실업과 빈곤 문제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 돌봄 부담의 심화, 디지털 격차, 기후위기 등 새로운 사회·환경적 위험에 노출된 복합적이고 중첩된 취약성을 지닌 계층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취약계층이 새롭게 부각됨에 따라 각 부처별로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책의 분절적 추진과 부처 간 협력 부족으로 인해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의 발굴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였다. 이는 부처별로 상이한 법령 목적과 정책대상 기준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경계선상의 취약계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이었다. 협업 전략 중 하나로 부처 간 협업을 총괄·관리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21대 국회에서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2024년 5월 29일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으며, 입법화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보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법률이 제정될 경우, 이를 근거로 한 취약계층 실태조사 실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취약계층 관련 통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법·제도에서 상이하게 규정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개념을 검토하고, 유형별 통계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통계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세 가지 주요 주제로 구성된다. 첫째, 현행 법령 및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정의와 현황을 검토한다. 둘째, 전통적으로 사회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어 온 ‘전통적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승인통계 현황을 검토한다. 여기에는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외국인 등이 포함되며, 저소득층의 경우 다양한 통계에서 이미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제외하였다. 셋째,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 즉 고립·은둔형 개인, 영케 어러와 같은 돌봄 취약계층, 기후변화 및 재난·안전 취약계층, 디지털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관련 통계 활용 현황과 개발 동향을 살펴본다.

결국 본 연구는 부처 간 정책의 분절성과 법적 정의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취약계층 지원의 한계를 진단하고, 통합적이고 실증적인 통계 기반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정책 현장과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취약계층’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소수자’, ‘약자’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며, 관련 법령과 국가통계에 한정하여 검토하였음을 밝힌다.

제 2 장

법·제도에서의 취약계층

제1절 취약계층 관련 법령 현황

‘취약계층(Vulnerable groups)’ 개념은 1970년대 O’Keefe 등이 수행한 재난연구¹⁾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당시 연구는 재난이 단순히 자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구조와 개인의 취약성이 결합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이후 빈곤과 사회적 취약성의 구조적 관계를 탐구하는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취약계층’ 개념이 정책 및 학문 분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법 분야에서는 1990년대부터 국제 인권 문서에서 ‘vulnerable groups’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국제적 논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이어졌다.²⁾

우리나라에서도 학문적으로나 대중적으로 ‘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으나 국내 문헌상으로 그 기원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장민영(2024)에 따르면, 법령상 ‘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96년 개정·시행된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로 추정된다. 해당 법령 제14조의2 제6항 제4호에서는 재정경제원 재정정책국 인력개발과의 업무로 “여성·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정책의 협의”³⁾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때 여성과 고령자가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언급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취약계층 개념이 법적 용어로서 처음 사용된 사례로 평가된다.⁴⁾

이후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분야의 법령과 정책에서 점차 확산되었다. 초기에는 포괄적 의미의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각 법령의 목적에 따

1) O’Keefe 외 2인(1976)은 재난이 자연적 요인보다는 사회·경제적 요인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개인의 취약성과 빈곤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초기 연구로 평가됨

2) 장민영(2024), “법령상 취약계층의 개념과 권리보장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제5074호, 1996.6.29. 개정 및 시행 참조

4) 장민영(2024), “법령상 취약계층의 개념과 권리보장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라 ‘○○ 취약계층’과 같이 특정 영역의 취약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용어들이 등장하였다. <표 2-1>과 같이 가장 먼저 등장한 세부 유형은 ‘보건의료 취약계층’으로,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1월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해당 법에서는 매 5년마다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노인과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 개념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었다.⁵⁾

이후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복지 확충을 중점 과제로 삼으면서 ‘근로 취약계층’, ‘사회 취약계층’, ‘안전 취약계층’, ‘지식정보 취약계층’ 등의 용어가 처음으로 법령에 등장하였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교육과 고용 중심의 성장정책 기조에 따라 ‘교육 취약계층’, ‘영양 취약계층’, ‘취업 취약계층’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문화와 복지의 균형 발전을 강조하면서 ‘관광 취약계층’, ‘농어촌 취약계층’, ‘문화 취약계층’, ‘재난 취약계층’,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 취약계층’ 관련 법령이 마련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적 포용정책 기조 아래 ‘감염 취약계층’, ‘경제 취약계층’, ‘민원 취약계층’, ‘안전관리 취약계층’, ‘원격교육 취약계층’, ‘정보 취약계층’, ‘한파·폭염 취약계층’ 등의 용어가 법령에 새롭게 추가되었다.

가장 최근의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청년세대의 구조적 어려움을 반영한 ‘취약계층 청년’과 디지털 격차 문제를 다루는 ‘디지털 취약계층’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청년기본법」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3월에 제정되었으나,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의 조문은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 시기에 신설되었다. 또한 2025년 1월 제정된 「디지털포용법」을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이 공식적인 법적 용어로 추가되었다.

<표 2-1> 정부별 취약계층 최초 정의 시기⁶⁾

김대중 정부 (’98.2~’03.2)	노무현 정부 (’03.2~’08.2)	이명박 정부 (’08.2~’13.2)	박근혜 정부 (’13.2~’17.3)	문재인 정부 (’17.5~’22.5)	윤석열 정부 (’22.5~’25.4)
보건의료	근로 사회 안전 지식정보	교육 영양 취업	관광 농어촌 문화 재난 저소득 주거	감염 경제 민원 안전관리 원격교육 정보 한파·폭염	청년 디지털

* 전통적 취약계층(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은 제외함. 최초 정의 시기는 해당 취약계층 용어를 포함한 조문의 신설 기준임(청년기본법은 ’20.2월 제정되었으나, ‘취약계층 청년’ 정의는 ’23.3월에 신설됨)

5)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 ②항 7호(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6)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2023.7.19. 관계부처 합동)에서 발췌

이처럼 각 정부별로 등장한 취약계층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면, 시대별 정책 기조와 사회적 관심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각 시기의 정부가 중점적으로 다룬 취약계층의 유형은 당시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와 정책적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통해 취약계층 개념이 단순한 사회적 약자 범주를 넘어, 시대적 변화와 위험 요소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3월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표 2-2>와 같이 ‘취약계층’ 용어를 사용하는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포함)은 총 149개로 확인된다. 이 중 법률은 72개, 대통령령(시행령)은 49개, 부령(규칙)은 28개에 해당된다. ‘취약계층’ 개념이 다양한 정책 영역으로 확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최근 사회 전반에서 이 개념이 광범위하게 제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의미로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는 법령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을 비롯해 총 70개 법령으로 취약계층 용어를 사용하는 법령의 약 절반가량에 해당된다. 취약계층을 특정한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집단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나머지 법령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식정보 취약계층’, ‘디지털 취약계층’, ‘안전 취약계층’ 등과 같이 법령의 목적이나 정책분야에 따라 ‘취약계층’ 앞에 수식어를 결합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합성어 형태는 해당 법령이 다루는 정책 영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며, 각 분야별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칭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 관련 법령에서는 ‘디지털 취약계층’이, 산업안전 관련 법령에서는 ‘안전 취약계층’이 사용되는 식이다.

이와 같은 용어 사용의 다양화는 취약계층 개념이 단일한 사회적 집단이 아니라, 각 분야의 위험 요소와 환경 변화에 따라 다층적으로 정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또한 향후 통계 및 정책 설계 단계에서 부문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모두 ‘취약계층’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재난안전법」은 법률과 시행령에서 ‘취약계층’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주거기본법」은 법률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시행령에서만 ‘취약계층’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동일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경우를 중복으로 보아 1개의 법령으로 간주한다면 취약계층 관련 법령 수는 <표 2-3>과 같이 110개로 볼 수 있다.

<표 2-2> 취약계층 관련 법령 현황

구분	법령 수	해당 법령(약칭)
전체	149개	
취약계층	70개	사회적기업육성법, 미세먼지법, 아동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청년기본법, 북한인권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인신매매방지법, 에너지이용법 등
사회(적) 취약계층	18개	사회보장기본법, 병역법, 여성폭력방지법, 자원봉사활동법 등
지식정보·디지털·교육 취약계층	12개	도서관법, 원격교육법, 디지털포용법, 발명교육법, 법교육지원법, 보조금관리법, 인구감소지역법 등
안전 취약계층	10개	재난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법, 방송통신발전법, 화재예방법, 재난관리자원법, 박물관미술관법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	10개	보건의료기본법, 감염병예방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등
문화·관광·예술 취약계층	6개	관광진흥법, 문화예술교육법, 예술인복지법, 한국관광공사법 등
근로·취업 취약계층	7개	고용보험법, 고용정책법, 청년고용촉진법, 구직자취업촉진법 등
저소득·빈곤 취약계층	6개	모자보건법, 개발제한구역법, 공항소음방지법 등
기타 취약계층 (주거, 농어촌, 민원, 환경보건, 기후위기)	10개	공원녹지법, 농어업인삶의질법, 농어촌리모델링법, 민원처리법, 환경보건법, 탄소중립기본법 등

* '취약계층' 포함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인출(2025.3.25. 기준), '취약계층'과 유사어인 사회적 약자, 약자, 소외계층 등은 미포함

<표 2-3> 취약계층 관련 법령 현황(중복 제외)

구분	법령 수
전체	110개
취약계층	54개
사회(적) 취약계층	13개
지식정보·디지털·교육 취약계층	9개
재난·안전 취약계층	8개
보건·의료 취약계층	5개
문화·관광·예술 취약계층	4개
근로·취업 취약계층	5개
저소득·빈곤 취약계층	5개
기타 취약계층 (주거, 농어촌, 민원, 환경보건, 기후위기)	7개

* '취약계층' 포함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인출(2025.3.25. 기준), '해당 법령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취약계층'이 각각 사용된 경우에는 1개 법령으로 간주

제2절 법령상 취약계층 정의

우리나라 현행 법령 중 취약계층의 정의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다음 <표 2-4>와 같다. 여러 법령에서 ‘취약계층’을 다루고 있으나, 그 법적 대상인 ‘취약계층’에 관한 정의, 적용 범위, 수준 등과 같은 제공 정보 수준에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일부 법령은 법적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정의를 담고 있으나, 대부분의 법령에서는 ‘취약계층’ 용어를 단순히 언급하거나 어린이·노인 등의 대상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친다.

<표 2-4> 현행 법령상 ‘취약계층’ 정의 사례7)

용어	해당 법령(약칭)	취약계층 정의(범위)	부처
취약계층	사회적기업 육성법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고용부
	미세먼지법 시행령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환경부
	아동복지법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아동,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의 아동 등	복지부
	청년기본법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국조실
사회(적) 취약계층	이러닝산업법 시행령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고령자, 장애인, 청년 또는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 등	산자부
	자원봉사활동법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인 자 등	행안부
	공공주택법 시행령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국토부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법 시행령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농어촌 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인 사람 등	문체부
디지털 취약계층	디지털포용법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능정보 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과기부

7) ‘취약계층’ 포함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인출(2025.3.25. 기준) 법령 중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의한 주요 법령

용어	해당 법령(약칭)	취약계층 정의(범위)	부처
원격교육 취약계층	원격교육법 시행령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인 학생,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의 자녀인 학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학생,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학생,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학생 등	교육부
교육 취약계층	발명교육법	도서·벽지 학생, 아동복지시설 아동,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등	특허청
안전 취약계층	재난안전법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	행안부
	소비자기본법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공정위
보건의료 취약계층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노인·장애인·임산부·어린이 등	복지부
	지역보건법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복지부
감염 취약계층	감염병예방법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복지부 질병청
영양 취약계층	국민영양관리법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복지부 질병청
건강 취약계층	국민건강증진법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복지부 질병청
문화적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노인, 장애인 등	문체부
관광 취약계층	관광진흥법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자활급여 수급자,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	문체부
취업 취약계층	고용정책법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고용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영세자영업자, 취업취약계층, 취약청년, 자활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중장년 등	고용부
주거 취약계층	공원녹지법	쪽방 거주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	국토부
민원 취약계층	민원처리법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및 정보격차로 인하여 민원의 신청 등에 제약을 받는 사람	행안부
환경보건 취약계층	환경보건법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부

위 사례 중 비교적 포괄적 의미의 ‘취약계층’ 용어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법령 중 하나로 고용노동부 관할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꼽을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취약계층 범주에 어떤 사람을 포함하는지, 각 호의 취약계층 유형별로 근거가 되는 관련 개별법을 각각 명시하여 총 12개 유형으로 법적 대상을 제시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정의된 취약계층의 기준은 다른 법령에서도 인용되고 있다.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령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취약계층 기준을 인용하여 해당 법적 대상으로서의 취약계층을 규정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취약계층의 기준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한편, 김태완 외(2024)는 법령상 취약계층을 생애주기, 개인 및 가구 특성, 생활영역으로 세분화하여 <표 2-5>와 같이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

<표 2-5> 국내법 중 '취약계층 세부 유형(김태완 외, 2024)

분류기준	취약계층	세부유형
연령	아동·청소년	아동복지시설 아동, 13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등
	청년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 가족돌봄 청년 등
	노인	65세 이상, 독거·여성·장애 노인 등
개인 및 가구 특성	장애인	심신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 등
	여성	임산부, 경력단절여성, 미혼모, 모자가정 등
	노약자 등	고령자, 한부모·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소년·소녀 가장, 범죄피해자 등
	저소득층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노숙인 등	노숙인, 쪽방 거주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생활영역	소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 긴급복지지원대상, 근로장려세제 수급자 등
	건강·의료	감염병,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체납, 정신건강 취약층, 영양부족층 등
	주거·주택	최저주거기준 미만 거주자, 비정형주택 거주자(옥탑, 쪽방, 고시원 등), 다중과다 체무자 등
	고용·노동	저임금·비정규직 근로자, 산업재해 피해자 등
	문화·환경	디지털리터러시, 기후취약계층, 정보문화 취약계층 등
	안전·재난	폭염·홍수 등 재난 취약계층, 학대·폭력·성희롱 등 사회재난 취약계층

* 출처: 김태완 외(2024), '취약계층 생활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연구'(교육부 수탁과제)

제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취약계층의 법적 보호의 한계를 인식하고 관련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근거가 될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취약계층 보호·지원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기 위한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취약계층보호·지원법안)」을 발의⁸⁾하였다. 동 법안은 여러 법안에서 취약계층의 개념과 범위 등이 혼재되어 발생한 규정 간 혼란과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취약계층’과 ‘취약계층 보호·지원정책’의 정의를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법률에서 정의한 우리나라 취약계층의 규모와 현황을 총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규정도 포함하고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기한 만료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취약계층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졌는데, 장민영(2024)⁹⁾은 취약계층보호법(안)이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차원의 각종 권리보장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의 <표 2-6>과 같이 그 정의와 범위를 보완하여 수정안을 제안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취약계층

8)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 21대 국회 정경희 외 11인 발의('23.12.19)

9) 장민영(2024), “법령상 취약계층 개념과 권리 보장에 관한 연구” 재구성

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그 적용 대상자 및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혼란을 방지하여야 하며, 취약계층 관련 지원정책은 교육, 보건·안전, 고용·근로, 복지·문화, 환경·주거, 존엄·평등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여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으로 설명하고 있다.

<표 2-6> 취약계층보호법(안)의 취약계층 정의 수정안

취약계층보호법(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취약계층”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및 기타 조건으로 인하여 사회참여의 기회가 제한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혜택을 제공받을 기회로부터 배제되기 쉬운 계층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취약계층”이란 신체적·정신적 또는 사회·경제·기술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가 제한 또는 배제되어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사람 또는 사람들을 말한다.</p>

* 출처: 장민영(2024), “법령상 취약계층 개념과 권리 보장에 관한 연구”(한국법제연구원)

제 3 장

전통적 취약계층과 국가통계

제1절 전통적 취약계층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이 우리나라 법령 중 가장 먼저 취약계층 용어를 사용한 법령은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1996년)」이다. 동 법령에서는 여성과 고령자를 취약계층으로 꼽았다. 법령마다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을 살펴보면, 「재난안전기본법」 제3조에서는 ‘안전 취약계층’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감염병예방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으로 각각 저소득층, 어린이, 노인, 장애인과 노인, 장애인을 꼽고 있다. 또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결혼이민자를,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를, 「지역보건법」에서는 여성, 노인, 장애인을, 「환경보건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를 취약계층으로 언급하였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의 범위, 대상을 언급한 법령들을 살펴보면, 2장의 <표 2-4>에서와 같이 아동(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인, 한부모가족, 외국인 등이 많이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로 다른 법령에서 같은 ‘취약계층’ 용어를 사용하나 그 범위가 다른 경우도 나타난다. 「재난안전법」과 「소비자기본법」은 ‘안전 취약계층’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재난안전법」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는 반면, 「소비자기본법」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포괄 범위에 다소 차이가 있다. 「보건의료기본법」과 「지역보건법」도 동일하게 ‘보건의료 취약계층’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노인, 장애인을, 「지역보건법」에서는 여성, 노인, 장애인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범위를 다르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를, 「환경보건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를 취약계층으로 언급하는 등 여러 법령에서 유사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여러 법률 중 대표격인 「사회보장기본법」은 1963년 11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로 처음 제정되었으며, 이후 1995년 12월 전면 개정되어 현

제의 「사회보장기본법」으로 대체되었다. 이 법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근거 법률로,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는 곧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집단이 국가의 보호 및 지원 대상임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태완 외(2022)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제시한 이러한 사회적 위험 요인에 노출된 사람들을 전통적 취약계층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빈곤층,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한부모가족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은 개인의 생애주기나 신체적·경제적 조건 등으로 인해 사회적 위험에 취약한 계층으로 정의된다. 정리하자면, 전통적 취약계층은 개인의 특성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제한된 집단으로, 사회정책의 핵심 대상이 되어 왔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한부모가족, 외국인 등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복지정책과 관련된 주요 법령에서 보호 및 지원의 대상이 된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전통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법령에서 이들이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 이들과 관련된 국가승인통계의 작성 및 활용 현황을 살펴본다.

제2절 전통적 취약계층 유형과 국가통계 현황

1. 아동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은 아동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아동복지법」, 「실종아동법」, 「아동학대처벌법」, 「장애아동복지법」 등 주요 아동 관련 법령에서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약 663만 명으로, 전체 인구 5,168만 명 중 약 12.8%를 차지한다.¹⁰⁾

그러나 일부 법령에서는 입법 목적이나 정책대상 규모의 문제 등으로 아동 기준 연령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아동수당법」은 법적 대상 아동을 8세 미만으로 제한한다. 이는 예산상의 문제, 즉 아동수당 지급 예산의 단계적 확대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2018년 제정 당시에는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

10) 2023.12월 공표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 기준, 외국인 포함 만 18세 미만 인구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기준인 8세 미만으로 확대된 것이다. 「아이돌봄지원법」도 법적 대상인 ‘아이’를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도 ‘아동’과 마찬가지로이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이는 민법 제4조에서 만 19세 이상을 성년으로 보는 규정과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연령 정의의 차이는 법령의 목적인 복지, 교육, 보호, 지원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 관련 법령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아동과 관련된 국가승인통계 역시 폭넓게 작성되고 있다. 2025년 4월 기준 통계정책관리시스템(narastat.kr)에서 ‘영유아’, ‘유아’, ‘아동’, ‘어린이’, ‘청소년’ 등의 키워드로 추출된 승인통계는 총 22개로 확인된다(단, 지방자치단체 작성 통계는 제외). 대부분의 통계는 만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나, 일부 통계는 특정 연령대나 학령 기준으로 구분되어 작성되고 있다.

초기 아동 관련 통계는 주로 요보호아동, 건강, 질병 등 보호 중심의 항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아동의 정신건강, 도박, 인권 등 보다 다양한 사회적 취약성을 반영하는 주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생존권 차원을 넘어, 권리와 발달, 참여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아동 복지에 접근하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보여준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국가승인통계는 아니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자료로서 공개 활용되고 있다.

<표 3-1> 아동¹¹⁾ 관련 국가통계

통계명	조사대상	근거법률	작성기관	주기	최초작성
가정위탁 국내 입양현황	만 18세 미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1년	1994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만 18세 미만	-	보건복지부	1년	1994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종사자 현황보고	만 18세 미만	-	보건복지부	1년	1996
아동 및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만 5세, 만 12세	구강보건법 제9조	질병관리청	3년	2003

11) 통계정책관리시스템(2025.4.30. 기준)의 국가승인통계를 대상으로 ‘영유아’, ‘유아’, ‘아동’, ‘어린이’, ‘청소년’ 키워드로 추출함, 작성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통계는 제외

통계명	조사대상	근거법률	작성기관	주기	최초작성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만 6세 미만(취학 전)	-	교육부	1년	2004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중1~고3 재학생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와 보건의료기본법 제35조 및 제53조	질병관리청	1년	2005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	초4~고3 재학생	청소년보호법 제33조	여성가족부	2년	2006
아동종합실태조사	만 18세 미만	아동복지법 제11조	보건복지부	3년	200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초4~고3 재학생	-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1년	2009
학대피해아동 보호현황	만 18세 미만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보건복지부	1년	2009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년 기준 초4, 중2 패널	-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1년	2010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19년 기준 초4 재학생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실태조사 등)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1년	2011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여성가족부	3년	2011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재학생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	식품의약품 안전처	3년	2012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	1~3세, 6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1년	2013
청소년 방과후 활동수요 및 현황조사	초1~중3 재학생	청소년기본법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3년	2018
청소년 건강패널조사	초6 재학생	-	질병관리청	1년	2020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	여성가족부	3년	2021
유아교육 실태조사	유치원 재원생	-	교육부	5년	2022
지원·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패널조사	만 18세 미만	-	아동권리 보장원	1년	2023
어린이 미디어이용조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재학생	-	한국언론 진흥재단	3년	2023
청소년 도박실태조사	초4~고3 재학생	-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	1년	2024

2. 노인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기준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으로 정의되고 있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1,051만 명으로, 전체 인구 5,168만 명 중 약 20.3%를 차지한다.¹²⁾ 이는 이미 고령사회(aged society)를 넘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수치로, 날로 증가하는 고령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2025년 4월 기준 통계정책관리시스템(narastat.kr)에서 ‘노인’, ‘고령’ 등의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승인통계는 총 8종으로 확인된다(단, 지방자치단체 작성 통계는 제외). 가장 오래된 노인 관련 통계는 1996년에 작성된 「노인복지시설현황」으로, 이는 노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보고통계이다. 이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요 통계로는 「노인학대통계」가 최초로 작성되었으나, 이 통계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접수한 신고 건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노인 개인이 직접 응답하는 조사는 아니다. 따라서 노인을 응답자로 한 최초의 통계는 「고령자연구패널조사」로 볼 수 있다. 이 조사는 고령자의 삶의 질, 건강, 경제상태, 사회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사통계로 평가된다.

노인 관련 승인통계의 수는 8종으로 다소 적은 편이지만, 많은 국가승인통계에서 연령별 자료를 세분화하여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 구간을 ‘65세 이상’으로 설정하면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65세 이상’을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약 2만 7천 건(27,000건) 이상의 통계표가 조회된다. 이는 노인 관련 정보가 단독 주제의 통계뿐만 아니라 인구, 고용, 건강, 소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는 노인 관련 통계는 총 44종으로, 다른 주제에 비해 비교적 많은 편이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데이터처가 지역통계 작성 표준매뉴얼을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노인실태조사」(조사통계) 및 「노인등록통계」(행정통계) 등을 신규로 개발·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정책적 성과로 볼 수 있다. 지방정부 차원의 통계 확충은 지역별 노인복지 정책의 근거자료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고령사회 대응정책과 연계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2) 2023.12월 공표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 기준, 외국인 포함 65세 이상 인구

<표 3-2> 노인¹³⁾ 관련 국가통계

통계명	근거법률	작성기관	주기	최초작성
노인복지시설현황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0조의2(보고)	보건복지부	1년	1996
노인학대현황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	보건복지부	1년	2005
고령화연구 패널조사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	한국고용정보원	1년	2006
고령자 고용현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고용노동부	1년	2006
노인실태조사	노인복지법 제5조(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3년	2008
노인 장기요양 보험통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	1년	2011
고령친화용품 제조업 실태조사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0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년	202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년	2022

3. 여성

2025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인구¹⁴⁾는 2,585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68만 명의 절반에 해당한다. 그간 여성의 권리와 지위가 꾸준히 향상되어 2014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여성 양성평등의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청범죄통계」에 의하면 2023년 강력범죄 피해자의 87%가 여성으로, 여성의 범죄피해 취약성을 나타낸다. 또, e-나라지표 중 하나인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65.3%에 머물러 여전히 남성 임금과 30% 이상 격차가 나고 있으며 OECD 평균(2022년 11.2%)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같이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신체적, 경제적 취약성을 띠며, 일과 가정의 양립 면에서도 남

13) ‘통계정책관리시스템(www.narastat.go.kr)’에서 ‘노인’, ‘고령’ 키워드로 추출함(2025.4.30. 기준), 작성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통계는 제외

14) 2023.12월 공표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 기준, 외국인 포함

정보다 불리하다고 평가된다.

2025년 4월 기준 통계정책관리시스템(narastat.kr)에서 ‘여성’을 키워드로 추출한 승인 통계는 <표 3-3>과 같이 총 12종으로 확인된다. 여성 관련 통계는 주로 여성의 노동, 경제활동, 과학기술 분야 진출, 관리자 비중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확장되어 왔다.

여성 관련 통계의 시작은 2003년 작성된 ‘여성농업인실태조사’로 볼 수 있다. 이후 ‘여성기업실태조사’,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여성관리자패널조사’ 등 다양한 통계가 개발되면서 여성 인력과 관련된 영역의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었다.

<표 3-3> 여성¹⁵⁾ 관련 국가통계

통계명	근거법률	작성기관	주기	최초작성
여성농업인실태조사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8조	농림축산식품부	5년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1년	2003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년	200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 여성 참여현황	-	여성가족부	중앙 반기, 지방 1년	2006
여성관리자패널조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년	2007
여성가족패널조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년	2007
성폭력안전실태조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여성가족부	3년	2010
가정폭력실태조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여성가족부	3년	2010
성희롱실태조사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	여성가족부	3년	2015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7조	여성가족부	3년	2016
양성평등실태조사	양성평등기본법 제10조	여성가족부	5년	2016
여성폭력실태조사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2조	여성가족부	3년	2021

15) ‘통계정책관리시스템(www.narastat.go.kr)’에서 ‘여성’ 키워드로 추출함(2025.4.30. 기준), 작성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통계는 제외

2010년 4월 「성폭력방지법」의 제정 이후 여성의 범죄피해, 특히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통계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성폭력안전실태조사’, ‘가정폭력실태조사’, ‘성희롱실태조사’ 등 관련 통계가 단계적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기존 통계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여성 대상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2021년 ‘여성폭력실태조사’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 조사는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뿐 아니라 통제, 스토킹, 교제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젠더 기반 폭력 피해 경험을 포괄하고 있어 기존 통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든 국가통계 중 인적 통계는 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통계가 남·여 성별로 분리되어 제공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여성 관련 통계의 활용 범위와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4. 장애인

2025년 4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인현황」 통계에 의하면,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약 26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1%를 차지한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4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청각장애 16.8%, 시각장애 9.4%, 뇌병변장애 8.9%, 지적장애 8.9% 순으로 나타난다. 특히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은 2015년 42.3%에서 2024년 56.3%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고령화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2025년 4월 기준 통계정책관리시스템(narastat.kr)에서 ‘장애인’을 키워드로 추출한 승인통계는 총 15종으로 확인된다. 장애인 관련 통계는 1990년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최초로 작성된 ‘장애인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이후 장애인의 고용, 노동, 건강 등 특화된 분야별 통계가 개발되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장애인의 삶의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패널조사 형태의 통계도 도입되었다.

최근에는 발달장애인의 돌봄 부담과 인권침해 사건 등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발달장애인 가구의 보호자와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가 새롭게 개발되었다. 이 조사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 취업여건, 서비스 이용 및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고용정책과 복지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표 3-4> 장애인¹⁶⁾ 관련 국가통계

통계명	근거법률	작성기관	주기	최초작성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보건복지부	3년	199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 제11조	보건복지부	5년	1995
아동 및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구강보건법 제9조	질병관리청	3년	2003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문화체육관광부	1년	2005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년	2005
장애인현황	-	보건복지부	1년	2006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고용노동부	1년	2006
장애인 기업실태조사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제7조	중소벤처기업부	1년	2007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년	2008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반기	2013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	보건복지부	1년	2016
장애인 삶 패널조사	-	한국장애인개발원	1년	2018
장애인 학대현황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보건복지부	1년	2019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실태조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5조	보건복지부	3년	2019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년	2022

16) ‘통계정책관리시스템(www.narastat.go.kr)’에서 ‘장애인’ 키워드로 추출함(2025.4.30.기준), 작성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통계는 제외

5. 한부모 가구(가족)

한부모 가구는 배우자 없이 한 명의 부모가 생계 부양과 자녀 돌봄을 동시에 수행하는 가구를 의미하며, 2023년 인구총조사 기준 한부모 가구는 약 149만 3천 가구로 파악된다. 한부모 가구는 경제적 자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양육과 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결혼·동거·이혼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정서적·사회적 부담 또한 크다. 특히 여성 가구주의 경우 노동시장 내 성별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빈곤 위험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한부모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가구 일반사항, 자녀 돌봄, 일상생활 및 사회적 지지, 경제활동, 건강, 소득과 지출,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주거환경, 지원 사업 등 9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총 58개 항목(세부항목 103개)을 포함하고 있다.¹⁷⁾ 이를 통해 한부모 가구의 생활실태, 취약성, 정책 요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작성하는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 현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¹⁸⁾에 등록된 복지대상자 중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자(2023년 12월 기준 약 100만 7천 명)를 대상으로 작성되는 행정통계이다. 이 통계는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자격, 바우처 서비스 이용 등 총 5개 영역 8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¹⁹⁾

이 밖에도 여러 국가승인통계에서 한부모 가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작성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구총조사는 한부모 가구 수와 가구원 수 규모를,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한부모 가구의 연간 소비지출 수준을 알 수 있는 통계를 제공한다. 비록 한부모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단독 통계는 많지 않지만, 다양한 국가통계에서 한부모 가구의 경제·사회적 특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표 3-5> 한부모 가구(가족)²⁰⁾ 관련 국가통계

통계명	근거법률	작성기관	주기	최초작성
한부모가족실태조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	여성가족부	3	2012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 현황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	2019

17) ‘한부모가족실태조사’ 통계정보 보고서(2021.7, 여성가족부)

18)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정보 통합 포털

19)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 현황’ 통계 설명서(2024.7,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 ‘통계정책관리시스템(www.narastat.go.kr)’에서 ‘한부모’ 키워드로 추출함(2025.4.30. 기준)

6. 다문화·외국인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구는 약 193만 5천 명이며, 다문화 가구는 41만 6천 가구, 다문화 인구는 119만 2천 명, 다문화 자녀 수는 30만 5천 명으로 파악된다. 또한 2024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외국인 취업자는 약 101만 명에 이르러 국내 노동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4월 기준 통계정책관리시스템(narastat.kr)에서 ‘다문화’, ‘외국인’을 키워드로 추출한 승인통계는 총 11종으로 확인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작성 통계를 제외한 수치이다. 외국인 관련 통계 중 가장 오래된 통계는 법무부의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로, 1975년부터 작성되고 있다. 다만, 이 통계는 입출국 및 체류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되어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표 3-6> 다문화·외국인²¹⁾ 관련 국가통계

통계명	근거법률	작성기관	주기	최초작성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	법무부	1년	1975
외국인 직접투자 통계		산업통상자원부	분기	2005
고용허가제 고용동향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용노동부	분기	2006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행정안전부	1년	2007
외국인 토지 현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국토교통부	반기	2008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	여성가족부	3년	2009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년	2011
국민 다문화 수용성조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	여성가족부	3년	2012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1년	2012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여성가족부	3년	2014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한국부동산원	반기	2023

21) ‘통계정책관리시스템(www.narastat.go.kr)’에서 ‘다문화’, ‘외국인’ 키워드로 추출함(2025.4.30. 기준), 작성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통계는 제외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농촌 지역 중심의 국제결혼 붐으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가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지자체 주도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확산은 다문화 관련 통계 개발을 촉진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현재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총조사’는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등록외국인은 물론, 외국 국적 동포 거소 신고자와 불법체류자까지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여 외국인 관련 통계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가데이터처의 ‘인구동향조사’에서는 다문화 혼인·이혼·출생·사망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찰청의 ‘범죄통계’, 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에서는 외국인 범죄 관련 통계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에서는 외국인의 소득세 신고 현황 등을 구분하여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기초자료가 확보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다문화·외국인 통계는 총 9종으로 확인되며, 이는 국가데이터처의 지역통계 작성 표준매뉴얼 지원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등을 개발한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자체 기반의 통계 확충은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정책 개발과 외국인 지원체계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제 4 장

신(新)취약계층과 국가통계

제1절 신(新)취약계층

전통적 취약계층은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한부모가족, 외국인 등과 같이 인구학적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위험에 취약한 집단을 의미한다. 이들은 생애주기적 요인, 신체적·사회적 조건 등 개인의 특성으로 인해 구조적인 취약성을 가지는 계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변화 속에서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발현되면서, 이러한 전통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일반 인구집단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취약성이 나타나고 있다. 즉, 신(新)취약계층은 기존 취약계층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혹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해 개인의 적응력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격차를 통해 나타나는 집단을 의미한다. 사회환경 변화가 지속되는 만큼 신취약계층이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Taylor-Gooby(2004)가 제시한 ‘신(新)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은 후기산업사회의 이행 과정에서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위험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생애 과정 전반에서 개인이 직면할 수 있는 새로운 불안정으로 설명되며, 그 발생 경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저숙련 여성의 경우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문제, 둘째,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노인돌봄 비용 증가, 셋째,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더 심화되는 실업과 장기빈곤의 위험, 넷째, 전통적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로 인한 보호 공백 등이 대표적이다.²²⁾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불안정, 기후·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을 매개로 새로운 위험이 확산되고 있다. 청년층의 경제·사회적 불안,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노동자 등 불안정 고용계층의 증가, 고립·은둔·외로움 문제, 우울 및 자살 위험, 과다채무, 주거취약, 각종 학대 및 폭력, 재해·재난 등 다양한 형태의 위기상황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으며, 이에 노출된 계층에 대한 관심 또한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문제의 본질은 이러한 위험이 단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

22) 김태완(2023), ‘새로운 취약계층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 재인용

이 중첩되어 발생한다는 점에 있다. 전통적 위험과 신사회적 위험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신사회적 위험들끼리 결합하여 심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²³⁾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중첩된 위기가 실제 취약계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감염병, 경제적 충격, 사회적 단절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여러 취약계층이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는 향후 신취약계층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7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사회보장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취약계층 발굴, 취약계층 관련법 제정 추진, 실태조사 확대, 범부처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신취약계층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현재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취약계층 유형과 그와 관련된 통계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신(新)취약계층 유형과 국가통계 현황

1. 돌봄 취약계층(고립·은둔, 영케어러)

「국민 삶의 질 지표 2004」에 따르면, 위기 상황에서 인적·정신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 ‘사회적 고립도’는 2019년 27.7%에서 2021년 34.1%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2020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전국적으로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의해 대면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층의 고립·은둔 문제는 개인의 성향이나 일시적 현상으로만 볼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2021년 22세의 어린 청년이 아버지 간병에 지친 나머지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영케어러(Young Carer)’ 문제가 본격적으로 화두에 오르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청년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고립·은둔 청년이나 가족돌봄 청년과 같은 취약계층의 현황을

23) 김태완(2023), ‘새로운 취약계층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 재인용

파악할 수 있는 기초 통계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2022년 처음으로 ‘고립·은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서울 거주 만 19~39세 청년 중 약 12만 9천 명이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를 개발하고,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해당 조사에는 은둔의 계기와 기간 등 고립·은둔 관련 항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조사 결과 전국의 은둔·고립 청년은 약 24만 4천 명, 영케어러는 약 6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 조사는 청년의 위험 규모 추정에는 기여했지만, 생활 전반에 대한 세부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2023년에는 별도로 ‘고립·은둔 실태조사’가 추가로 개발·실시되었다. 여성가족부 또한 2024년에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층의 고립·은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만, 각 조사는 근거 법령에 따라 정해진 연령 범위가 서로 다르므로 자료 활용 시에는 대상 연령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34세로 정의한 반면, 「서울시 조례」는 19~39세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24세로 정의되지만,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 범위가 서로 상이하다.

<표 4-1> 고립·은둔 관련 통계(항목) 현황

통계명	조사대상	관련법	작성기관	최초작성	비고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서울) 19~39세	서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서울시	2022	미승인
청년 삶 실태조사	19~34세	청년기본법	국조실	2022	승인 (매2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19~34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국조실	2023	미승인
고립·은둔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9~24세	청소년기본법	여가부	2024	미승인

2025년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기존 복지제도에서 충분히 포착되지 않았던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여 정책적 보호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법률에서는 ‘위기아동·청년’을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며, 두 가지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일상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가족돌봄 아동·청년’, 둘째,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 기간 동안 제한된 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고립·은둔 아동·청년’이다. 이 정의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새로운 취약계층의 범위를 제도적으로 처음 규정한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사회조사와 인구총조사에서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 관련 조사항목을 신규 개발하여 조사에 반영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사회조사에는 개인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몇 개의 문항²⁴⁾이 존재하며,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는 이러한 문항을 활용해 ‘사회적 고립도’ 지표를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사회조사에서는 기존 문항을 확장하여 외로움, 은둔 여부, 외출 빈도, 외출 사유, 은둔 기간 등을 포함함으로써 보다 세부적인 통계가 작성될 예정이다.²⁵⁾

또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가족돌봄 시간을 비롯한 가족돌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조사항목이 추가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족돌봄 부담의 규모와 특성을 국가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며, 향후 가족돌봄 지원 정책의 기반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기후위기 취약계층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관련된 대표적인 현행 법령으로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있다. 이 법에서는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상기후’와 같은 주요 개념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으나, 정작 어떤 사람들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대상 기준, 범위 등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틀은 갖추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취약집단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적 정의는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다만, 세계기상기구(WMO)의 IPCC²⁶⁾ 제6차 보고서(2022년)에서는 기후변화 환경에서 특히 취약한 인구집단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취약계층은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야외노동자, 토착민, 임산부, 영유아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은 생물학적·경제적·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된 집단으로 분류된다(IPCC, 2022).

국내 연구에서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논의되고 있다. 김운정 외(2023)²⁷⁾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취약성이 높아, 생물학적·

24)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는 사회적 관계망과 관련하여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는지, 큰 돈을 빌릴 사람이 있는지,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 상대가 있는지 등의 조사항목으로 사회적 지지체계의 유무를 파악하고 있음

25) 우한수, 남상민(2025), 고립·은둔 실태 파악을 위한 2025년 사회조사 문항 개발 연구

26) 세계기상기구(WMO)와 그 산하기관인 환경계획(UNEP)에 의해 설립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문화적·경제적·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해 기후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표 4-2>와 같이 사회·경제·주거환경 특성에 따라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세분화하고, 폭염·한파·홍수 등 다양한 기후재난에 대한 노출도와 민감성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다.

<표 4-2> 기후위기 취약계층 유형

구분	기후위기 취약계층
사회적 특성	노인(65세 이상), 영유아(0~4세), 심혈관계 질환자, 장애인, 임산부, 소년·소녀 가정, 여성, 육외근로자, 무직자/실업자, 1인가구, 한부모가정, 노숙인, 저학력자
경제적 특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주거환경 특성	주거취약계층(쪽방촌, 고시원 등), 노후주택 거주자, 임차가구,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 거주자, 의료서비스·쉼터·녹지 접근성 낮은 지역 거주자

* 출처: 김윤정 외(2023), ‘기후위기 취약계층 적응 대책의 분배적 정의 도입방안: 도시 생태계서비스를 고려하여’, KEI Working Paper 2023-02

환경부(한국환경연구원)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4년 처음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부산 시민 2,4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폭염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집단은 쪽방이나 임대주택 등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67.5%가 폭염으로 인해 냉방비 부담 증가, 물가 상승 등의 경제적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49.3%는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의료비 증가(21.3%)와 직장소득 감소(13.1%)도 주요 피해로 나타났다. 또한 2025년 두 번째 실태조사가 진행 중²⁸⁾으로, 기후재난 대응과 적응 정책 마련에 필요한 근거자료가 지속적으로 확보되고 있다.

<표 4-3> 기후위기 취약계층 관련 통계

통계명	관련법	작성기관	최초작성	비고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탄소중립기본법	한국환경연구원	2024	미승인

27) 김윤정 외(2023), ‘기후위기 취약계층 적응대책의 분배적 정의 도입 방안: 도시 생태계서비스를 고려하여’, KEI Working Paper 2023-02

28) 뉴스핌 기사(2025.2.21.), [기후위기 시대] ③김윤정 KEI 박사 “기후취약계층 일상피해 커…다각적 접근 필요” 인용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후변화가 지역별·계층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²⁹⁾하였다. 아울러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와 범주, 정부의 역할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정책적 대응의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3. 디지털 취약계층

디지털 취약계층과 관련된 법적 정의는 「디지털 포용법」 제2조에서 명확히 규정된다. 이 법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과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의미한다. 「디지털 포용법」은 디지털 포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5년 1월 21일 제정되었으며,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디지털 포용’을 사회 구성원이 차별 없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는 정보격차 실태, 디지털 역량 수준 측정 통계 등 관련 실태조사의 실시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 능력의 격차가 새로운 양극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정보화기본법」을 근거로 이미 2004년부터 일반 국민과 취약계층 간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비교해 왔으며, 2025년 「디지털 포용법」 제정에 따라 기존 법령의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디지털 포용법으로 법적 근거를 통합하였다. 이에 따라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웹 접근성 실태조사’,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등이 주요 디지털 포용 관련 국가승인통계로 작성되고 있다.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민, 고령층,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측정한다. 2024년 조사에서는 전국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 대비 77.5% 수준으로 나타났다.³⁰⁾

‘웹 접근성 실태조사’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어려운 정도를 평가하는 조사로, 웹사이트 이용 빈도가 높은 8개 업종³¹⁾을 대상으로 1,000개 웹

29)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대책 현황과 쟁점」,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88호(2025.2.4.)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5.3.27.), ‘2024 디지털 정보격차·웹 접근성·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발표’

사이트를 임의 추출하여 접근성 준수율을 측정한다. 2024년 웹 접근성 평균 점수는 66.7점으로, 2019년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는 스마트폰 이용 행태를 조사하여 과의존 위험군 비율을 파악하는 통계로, 2024년 기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2.9%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의 과도한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성인 디지털 문해능력조사’는 우리나라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디지털 문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2024년 처음 실시되었으며, 결과는 2025년 9월 공표될 예정이다. 이 조사는 디지털 환경에서 성인의 정보활용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 4-4> 디지털 취약계층 관련 국가통계 현황

통계명	근거법률	작성기관	주기	최초작성	비고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지능정보화기본법, 디지털포용법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년	2004	승인 통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디지털포용법)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년	2004	승인 통계
웹 접근성 실태조사	(디지털포용법)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년	2008	승인 통계
성인 디지털 문해능력조사	(디지털포용법)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3년	2024	승인 통계

최근 키오스크 기반의 주문·결제 시스템 확대, 경기장 및 공연장의 온라인 예매 방식의 확산, 은행 점포 통합합 등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에게 새로운 접근성 장벽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2025년 4월 발생한 이동통신사의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 환경에서 직면하는 위험과 취약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환기시킨 사례로 평가된다.

31) 한국표준산업분류 21개 업종 중 선별(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4. 재난·안전 취약계층

재난·안전 취약계층은 전통적으로 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왔으나, 최근 사회적 문제와 재난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취약계층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18년과 2023년의 폭염, 2020년과 2022년의 폭우는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초래하였고, 이러한 자연재해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폭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침수로 사망하는 사건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잇따르자,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 역시 확대되었다. 「재난안전법」에서는 ‘안전 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의 재난 및 사고 피해 통계를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66조의9).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는 <표 4-5>와 같이 재난안전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개발 중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안전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위협으로 떠올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정의한 안전 취약계층(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위험 요소 발생 시 신속한 통계 보고서³²⁾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의 위해성이 문제가 되자 2024년 9월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어린이제품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는 등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표 4-5> 안전 취약계층 재난·사고 피해 통계 개발(안)(2023)

구분	세부 내용
통계명	안전취약계층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 실태조사
조사목적	국내 안전 취약계층 파악 및 재난·사고 피해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분야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근거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 (안전정보의 구축·활용) 1의 2
모집단	(목표모집단) 일반국민, 장애인, 저소득층 (조사모집단)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장애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명부
표본설계	층화확률비례계통추출
조사항목	응답자 특성, 어린이 현황, 노인 현황, 장애인 현황, 저소득층 현황, 자연 및 사회재난 안전 인식, 자연재난 피해현황, 자연재난 피해내용, 사회재난 피해현황, 사회재난 피해내용, 대응 및 처리과정

* 출처: 행정안전부·한국통계진흥원(2023),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 피해 통계 구축방안 연구, 저자 재구성

* 주: 2023년 연구용역 결과로 향후 실제 승인통계와는 다를 수 있음

32)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isafe.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보고서

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계층 관련 국내 통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법·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정의 현황과 국가통계 구축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2025년 3월 기준 약 150개의 현행 법령에서 ‘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이 중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제공하는 법령은 매우 제한적이다. 다수의 법령은 취약계층을 언급하거나 대상 집단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무르며, 정의를 명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령별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 범위,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재난안전기본법」과 「소비자기본법」은 모두 ‘안전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범위는 다르게 규정된다. 재난안전기본법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포함하는 반면, 소비자기본법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과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보건의료 취약계층’ 역시 포함 범위가 서로 다르다. 동일 계층 내에서도 연령 기준 등 적용범위가 일관되지 않은 사례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아동’은 법령에 따라 만 18세 미만, 만 12세 이하, 혹은 8세 미만으로 각각 다르게 규정되며, ‘청소년’ 역시 법령별로 9세~24세 또는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되는 등 기준의 차이가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차이는 예산 제약이나 행정적 필요 등 제도적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나, 연령 기준이나 계층 정의를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 통계를 비교·해석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 관련 통계를 활용할 때에는 해당 통계가 어떤 법령의 정의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는지, 통계 생산을 위해 어떠한 조작적 정의가 적용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고립·은둔’ 관련 통계 개발 과정에서도 기준 설정을 위해 국가데이터처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과 전문가 협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러한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국가통계 영역에서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전통적 취약계층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와 연계를 가진 통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인구·가구 형태 등 분류 변수를 활용해 취약계층별 통계 산출도 가능하다. 반면 새로운 취약계층의 경우 기존 통

계만으로는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신규 통계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취약계층 통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준비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디지털 취약계층 관련 통계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가데이터처 역시 기존 사회조사와 인구총조사에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 관련 항목을 반영하여 국민 전반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새로운 취약계층 통계를 개발할 때 법적 정의가 부재한 경우가 많고, 기관 간 범위와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는 경우가 있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새로운 취약계층 범주에 대한 통계 개발을 추진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대상의 수준과 범위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선행해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취약계층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통계 개발이 뒤따르는 현행 방식은 아쉬움이 있지만, 다양한 취약계층 유형에 대한 통계가 점차 마련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취약계층 전반의 통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25). 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3.27.). “「2024년 디지털 정보격차·웹 접근성·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 결과”. 보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2024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 관계부처 합동. (2023.7.29.).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사회관계장관회의 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23.12.26.).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사회관계장관회의 자료).
-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취약계층 청년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연구(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을 중심으로)**.
-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한국금융연구원. (2021). 디지털금융시대 취약계층 금융소비자보호.
- 김윤정, 김충기, 박진한, 모용원. (2023). 기후위기 취약계층 적응대책의 분배적 정의 도입방안: 도시 생태계서비스를 고려하여. KEI Working Paper 2023-02.
- 김윤정, 신지연. (2023).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사회적 취약성 실태조사 필요성 및 추진방향”. **환경포럼**, 제27권 제6호, 2023.11.30.
- 김제선. (2021). “건강취약계층의 개념과 법적 문제점, 그리고 건강보장을 위한 방안”. **의료법학**, 제22권 제3호. 대한의료법학회.
- 김태완 외. (2024). **취약계층 생활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설계 연구**.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김태완, 이주미, 김기태 외. (2022). **새로운 취약계층 현황과 대응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방하남, 강신욱. (2012). **취약계층의 객관적 정의 및 고용과 복지를 위한 정책방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한국노동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법제처·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2012).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정비 연구**.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 장민영. (2024). **법령상 취약계층의 개념과 권리 보장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행정안전부·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2020). **체계적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대책 개선방안 연구**.

Abstract**A Basic Research on Statistically Measuring Vulnerable Groups under Laws and Regulations****Kyung Ah Min, Yumi Gil**

To prepare for the growing demand for statistics related to vulnerable groups, this research examined the concept of vulnerable groups, as defined in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status of related statistics by type. As of March 2025, the term 'vulnerable groups' is being used in approximately 150 laws and regulations. However, most of laws and regulations simply mention the term or list the subjects. Only a handful of laws provides legal definitions of vulnerable groups. Furthermore, the scope and coverage of vulnerable groups vary across laws and regulations. In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nd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the term 'vulnerable groups' is used.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considers children, senior citizens,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low-income people, while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considers children, older persons, the weak,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mmigrants by marriage as vulnerable groups, which results in some differences in their scope. In the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nd the 「Regional Public Health Act」, the term 'medically vulnerable populations' is used. The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considers senior citizens, persons with disabilities, pregnant women, and children, while the 「Regional Public Health Act」 considers women, senior citizen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medically vulnerable population, which results in differences in their scope. Review results of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children and youth showed that age criteria differed across laws. Consequently, it was found that the level and scope of survey subject differed in statistics produced on the basis of each law.

This research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laws and statistics related to traditionally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senior citizens, women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newly emerging vulnerable groups such as those vulnerable to care who are isolated or reclusive, young peoples who need care, and those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Statistics on traditionally vulnerable groups are being utilized by segmenting existing statistics by classification variables (gender, age, household type, etc.) in addition to individual statistics on various topics. However, datasets on new vulnerable groups are very limited because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newly emerging vulnerable groups using general classification variables in existing statistics, and related statistics are newly being developed.

Key words: vulnerable group, traditionally vulnerable group, new vulnerable group, definition

연구진

- 민경아(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사무관)
- 길유미(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주무관)

* 연구진의 소속 및 직급은 연구과제 완료 시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연구보고서 2025-07

법·제도상 취약계층의 통계적 측정을 위한 기초 연구

인 쇄 2026년 1월
발 행 2026년 1월
발 행 인 김 진
발 행 처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TEL.(042)366-7100 Fax.(042)366-7123
홈페이지 <https://mods.go.kr/dsri>
ISSN(Online) 2733-4120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